

## 제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의안 번호	1159
----------	------

제출년월일 : 2007년 월 일  
제출자 : 제천시장

### 1. 폐지이유

- 지방공기업법의 개정(1999.1.29)에 따라 적용대상에서 삭제된 사업의 기준에 관하여 규정된 제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인 지방공기업법의 개정에 따라 제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 사업의 기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3. 관계법령 : 불임

4. 의안전문 : 불임

5.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없음

첨부 근거법령 1부

## 제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폐지조례안

제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조례 제16호, 1995. 1. 3)는 이를 폐지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관계법령

### 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 2007.5.11 법률 제8423호]

제2조 (적용범위) ①이 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부대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지방직영기업"이라 한다)과 제3장 및 제4장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와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수도사업(간이상수도사업을 제외한다)
2. 공업용수도사업
3. 궤도사업(도시철도사업을 포함한다)
4. 자동차운송사업
5. 지방도로사업(유료도로사업에 한한다)
6. 하수도사업
7. 주택사업
8. 토지개발사업
9. 삭제 <2005.7.13>

②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경상경비의 5할 이상을 경상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개정 2004.12.30>

1. 민간인의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주민복리의 증진에 기여할 수 있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나 지역개발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업 및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여행업 및 카지노업을 제외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동항 각호외의

부분의 규정에 의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22조의 규정을 준용할 수 있다. <개정 2002.3.25>

[전문개정 1999.1.29]

### 地方公企業法

#### [일부개정 1996.12.30 법률 5200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設置·經營하거나, 法人을 設立하여經營하는 企業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정하여 그 經營을合理化함으로써 地方自治의 발전과 住民의 福利增進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1980.1.4]

第2條 (適用範圍) ①이 法은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事業(그에 附帶되는 事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基準 이상의 事業으로서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設置·經營하는 事業(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事業中 第3章 및 第4章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園이 經營하는 事業에 대하여 適用한다.<改正 1992.12.8>

1. 水道事業(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工業用水道事業
3. 軌道事業(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
4. 自動車運送事業
5. 가스事業
6. 地方道路事業
7. 下水道事業
8. 清掃·衛生事業
9. 住宅事業
10. 醫療事業
11. 埋葬 및 墓地等 事業
12. 駐車場事業
13. 土地開發事業
14. 市場事業
15. 觀光事業

②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에 해당하는 事業에 대하여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을 적용할 수 있다.<改正 1992.12.8>

1. 屠畜場事業
2. 通運事業(渡船事業을 포함한다)
3. 自動車터미널事業

4. 體育場事業
5. 文化藝術事業(公演場, 劇場을 포함한다)
6. 公園事業
7. 經常經費의 5割 이상을 經常收入으로 충당할 수 있는 다음 각目에 해당하는 사업
  - 가. 第1項 各號에 해당하는 사업중 同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 나. 기타 住民의 福利를 增進하거나 地域開發 또는 地域經濟活性化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全文改正 1980·1·4]

### 地方公企業法

[일부개정 1999.1.29 법률 5708호]

第1條 (目的) 이 法은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設置·經營하거나, 法人을 設立하여 經營하는 企業의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을 정하여 그 經營을 合理化함으로써 地方自治의 발전과 住民의 福利增進에 寄與하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全文改正 1980·1·4]

第2條 (적용범위) ①이 法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그에 附帶되는 사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중 第5條의 규정에 의하여 地方自治團體가 직접 設置·經營하는 사업으로서 大統領令이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이하 "地方直營企業"이라 한다)과 第3章 및 第4章에 의하여 設立된 地方公社와 地方公團이 경영하는 사업에 대하여 각각 적용한다.

1. 水道事業(簡易上水道事業을 제외한다)
2. 工業用水道事業
3. 軌道事業(都市鐵道事業을 포함한다)
4. 自動車運送事業
5. 地方道路事業(有料道路事業에 한한다)
6. 下水道事業
7. 住宅事業
8. 土地開發事業
9. 醫療事業

②地方自治團體는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經常經費의 5割 이상을 經常收入으로 충당할 수 있는 사업을 地方直營企業·地方公社 또는 地方公團이 경영하는 경우에는 條例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法을 적용할 수 있다.

1. 民間人の 경영참여가 어려운 사업으로서 住民福利의 增進에 기여할 수 있고, 地域經濟의 活性化나 地域開發의 촉진에 이바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사업

2. 第1項 各號의 1에 해당하는 사업중 同項 本文의 規定에 의한 大統領령이 정하는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

③地方自治團體는 地方直營企業을 設置·경영함에 있어서 民間經濟를 委縮시키거나 공정하고 자유로운 經濟秩序를 저해하거나 環境을 削손시키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99.1.29]

###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일부개정 2007.3.9 대통령령 제19925호]

제2조 (지방직영기업의 범위) ①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이상의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5.3.31>

1. 수도사업 : 1일 생산능력 1만5천톤이상
2. 공업용수도사업 : 1일생산능력 1만톤이상
3. 궤도사업 : 보유차량 50량이상
4. 자동차운송사업 :보유차량 30대이상
5. 지방도로사업 : 도로관리연장 50킬로미터이상 또는 유료터널·교량 3개소 이상
6. 하수도사업 : 1일 처리능력 1만5천톤 이상
7. 주택사업 : 주택관리 연면적 또는 주택건설 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8. 토지개발사업 : 조성면적 10만평방미터이상
9. 삭제 <2007.3.9>

②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조제1항 각호에 규정된 사업으로서 제1항 각호의 기준에 새로이 도달하게 된 사업에 대하여는 그 기준에 도달한 날부터 6월이내에 그 사업에 대한 법적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일부개정 2007.5.17 법률 제8451호]

제41조 (행정상 입법예고) ①법령등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이하 "입법"이

라 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입법안을 마련한 행정청은 이를 예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1. 입법내용이 국민의 권리·의무 또는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
2. 입법이 긴급을 요하는 경우
3. 상위 법령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4. 예고함이 공익에 현저히 불리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5. 입법내용의 성질 그 밖의 사유로 예고의 필요가 없거나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삭제 <2002.12.30>

③ 법제처장은 입법예고를 하지 아니한 법령안의 심사요청을 받은 경우에 입법예고를 함이 적당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에 대하여 입법예고를 권고하거나 직접 예고할 수 있다.

④ 입법예고의 기준·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천시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

(1995. 1. 3 조례 제16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의 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 및 기준) 지방공기업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은 상근하는 직원수 또는 사업규모 중 그 어느 하나가 별표에 정하는 기준 이상의 사업으로 한다.

제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이 조례 시행과 동시 제천군지방공기업법적용대상사업의기준에관한조례(1992. 9. 23.조례 제775호)는 이를 폐지한다.